

1. 개정이유

승강기의 제조·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·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·수입업자의 설계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 추가 반영(안 제21조제1항제4호의2 신설)
 - 승강기의 제조·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·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절차(설계 심사-공장심사-안전성시험) 중 설계심사 면제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법 제18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: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
심사의 면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) ①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(이하 “승강기안전인증”이라 한다)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~ 4. (생략) <신설> 5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21조(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법 제18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: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의 면제</u>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